(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	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	당하	는 곳에 √ 표시를 합니	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시원그님	사용승인	[]전체	[]일부	1	가설건축물 존치기	기간		년	월	일까지
신청구분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	1	임시사용 신청기간	<u>'</u>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2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성명						(전화번호 :)
신청인	주소									
(건축주)					합, 한국토지주택공 P분하여 적습니다.	사, 지빙	당사, 정부 ⁵	투자기:	관, 주	-택조합,
등기촉탁		[]	희망함			[]희	망하지 않음			
희망여부	_				기재 및 관리 등에 R 관할 등기소에 등기		_		는 비	에 따라
	대지위치									
대지조건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	└─── 제22조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틱 제16조·제	데17.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 용 승인신	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u>l</u>			(서명	또는 인)
특별시	장 • 광역시	장 ∙ 특별기	자치시장	• =	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	구청	<u>당</u> 귀	하
• 임시사용승인 •	사용승인(일부) • 대	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	!을 신	신청하는 경우 I.전체기	내요는 적기	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세 적게 되어 소유권 등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		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리 건축주
│ . 전체 <i>7</i>	내 요									
대지면적	η				건축면적					
 건폐율				m²	연면적 합계					m²
 연면적 합계(용				%	용적률					m²
②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수	m²		부속건	 초묵			%
					동			동	,	m²
③ 주용도		세	대/호/가구수	=	세대 호 	총 주치	l내수			
주택을 포함히	l는 경우 세대/.	 호/가구별 평	명균전용면적		가구					대
	Λ·l	형	식			용량				m²
④ 하수처리시	2					1				(019)

	구분		옥내		옥외		ပ	[근		전기자	동차	면제
주차장	자주식	대	m²	대		m²	대		m²	옥내:	대	-11
	기계식	대	m²	대		m²	대		m²	옥외: 인근:	대 대	대
일괄신고	·	대수선	1		위치변	경				그 밖의	사항	
내용												
공개공지 면적	 	조경	면적		건축선후	-퇴	면적		건축	·선후퇴 기	거리	
	ı	n²		m²				m²				<u> </u>
지하수위		기초	<u>형</u> 식 설:			력			구조	절계 해석	석법	
(G.L r	n (지	내력기초, 피	·일기초)	(지내력/	기초역	인 경우)	t/m²	(등	가정적해 [,]	석법,	동적해석법)
[]건축협정읡	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을	을 체결한	한 건	축물		
다중이용건축	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⑥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다) 층수		яŀі	낙면적	합계(m²)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⑤ 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주 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 구분 []주 건축물 []부속 건축물 ⑥ 동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설계자 사무소명(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감리자 사무소명(전화번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시공자 회사명(전화번호): ※ ⑦호수 호 호 ※ ⑧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가구, 세대 주구조 ※ ⑨ 내진설계 적용 여부 ※ ⑩ 내진능력 지붕 ※ 건축면적(m²) ※ 연면적(m²)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²)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지상: 층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보 • 차양길이(m), 기둥과 기둥사이(m), 벽과 벽사이(m) 특수구조 건축물 ※ ①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III-1.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⑥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	구분	(임 건	임시)사용승인 축물의 층별	⑩주 건축물의 동명칭	
⑫ 구조	② 구조 ③ 용도 ④ 면적(m²)		층구분	건축구분	15 구조	16 용도	⑪ 면적(m²)	및 번호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면	<u>'</u> 식급니다. 	
	⑩ 소유자 성명(명칭)	
18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0 소유권 지분
	주소	
		/

V. 공동주택 총괄

• ②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001-	7 6 4	M_2 /	게 ᆸ 기 의 .					
최초입주방식		[]분양	ļŧ D		[]임대		[]혼합
의꼬답구?	0.4	[]기타						
평면형식		[]계단	난실형		[]복도형			
	. I	[]중영	방집중공급방식		[]개별기름	름보일러	[]개별가스보일러
난방방4	'	[]지으	역난 방		[]기타			
취사용가스	-시설	[]액호	하석유가스(LPG	i)	[]도시가	_	[]기타
준공예정	1일					CCTV		개
			용 도			면 적(m²)		개 소
			[]경로당					
		Tal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②2 복리시 분양시설		주민 공동	[]주민운동시설					
	^걸 시설	시설	시설 []작은도서					
			[]기타					
			계					
		[]근린	^민 생활시설					
		시 설	종 류	설ㅊ	: 현 황	대지 내 현황		대지 외 현황
부대시설								
			상하수도·통신실 가여 적습니다.	널비•주차장	・조경시설・관	│ 리사무소・보안등・TV공	·청시	설·비상급수시설·그 밖의

V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십합건축물인 경	구에만 기/	내압니다. 		,	
(18)	* 23	24	⑪ 소유자 성명(명칭)	20	* 25
주 건축물의	층구분	호구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구분기호
동명칭 및 번호			주 소		
			•		

Ⅲ.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② 구분기호					
26 전유/공용	② 주/부	※ ⑳ 층구분	② 구조	③) 용도	③] 면적(m²)
※ ② 구분기호					
26 전유/공용	② 주/부	※ 28 층구분	② 구조	30 용도	③1) 면적(m²)
※ ② 구분기호					
26 전유/공용	② 주/부	※ 28 층구분	② 구조	30 용도	③1) 면적(m²)

수수료

없음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첨부서류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7. 「건축법」제48조의3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날 인이 있는 자료(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 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 1.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 2. ②~④: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3.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4.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5. ⑦·⑧: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 6. ⑨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7. ⑩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른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최대지반가속도 "를 적습니다.
- 8. ⑪ : 다음의 구분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2.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3.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4.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5.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6.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7.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8.기타

9. (12) ~ (17)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	존 건축물 층별 개요		Ŧ	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 10. 🔞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11. ②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 12. ②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 13. 🖾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14. 🕲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15. ②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아니합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